

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2. 21.] [환경부령 제1159호, 2025. 2. 21., 일부개정]

환경부 (샘물등, 먹는샘물등-토양지하수과) 044-201-7185

환경부 (수돗물, 수처리제-수도기획과) 044-201-7116

환경부 (정수기-물정책총괄과) 044-201-7156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먹는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(염분 등의 함량) 「먹는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의2에서 "염분(鹽分) 등의 함량(含量)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"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(總溶存固形物)의 함량이 2,000mg/L 이상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1. 3. 23.]

제1조의3(먹는물의 수질관리)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 ·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1.>

[본조신설 2011. 3. 23.]

제2조(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3., 2013. 2. 1.>

1.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시설
 2.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
- ②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(이하 "수질기준"이라 한다)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10. 30.>

1.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

2.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

3.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

④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10. 30.>

⑤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10. 30.>

⑥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 · 군 · 구"라 한다)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,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 · 군 ·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3. 23., 2013. 2. 1., 2013. 10. 30.>

⑦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 · 도지사를 거쳐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 환경부장관에게

보고하여야 한다.<[신설 2014. 7. 22.](#)>

1.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
 2. 수질검사 결과
 3.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
-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<[신설 2013. 10. 30., 2014. 7. 22.](#)>

제2조의2(냉 ·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· 관리) ① 냉 · 온수기 설치 · 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 ·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 · 온수기,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[개정 2013. 10. 30.](#)>

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[신설 2013. 10. 30.](#)>

1. 신고인(설치 · 관리자)
2. 냉 · 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
 - 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[개정 2013. 10. 30.](#)>
 -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 ·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.<[개정 2013. 10. 30., 2021. 7. 23., 2025. 2. 21.](#)>
1. 냉 · 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
 - 가.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
 - 나.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
 - 다. 냉 · 난방기 앞
2. 냉 · 온수기 관리방법
 - 가.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
 - 나. 고온 · 고압증기소독방법,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. 다만,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 · 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
 - 다.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 · 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, 기록을 유지할 것
 - 라.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(이하 "먹는샘물등"이라 한다)의 투입구,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
3. 정수기 관리방법
 - 가.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
 - 나. 고온 · 고압증기소독방법,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,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. 이 경우,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
 - 다.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, 기록을 유지할 것
 - 라.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
 - 마. 먹는물 투입구,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

[[본조신설 2011. 3. 23.](#)]

[[제목개정 2013. 10. 30.](#)]

제2조의3(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) 「먹는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(이하 "샘물보전구역"이라 한다)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[[본조신설 2013. 10. 30.](#)]

제2조의4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주민(이하 "주민등"이라 한다)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
 2.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
 3.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
-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·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10. 30.]

제2조의5(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)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 4 제2호72)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(洗瓶)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7., 2019. 12. 20.>

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"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른 허가(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7.>

[본조신설 2013. 10. 30.]

제3조(샘물등의 개발허가)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(이하 "샘물등"이라 한다)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(이하 "조사서"라 한다)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·변경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08. 9. 25.>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 <신설 2008. 9. 25.>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
2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·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8. 9. 25., 2011. 3. 23., 2023. 6. 1.>

1.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

2.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

3. 「수도법」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

[제목개정 2011. 3. 23.]

제3조의2(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명 또는 상호명

2. 대표자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
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3. 23.]

제4조(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)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1. 사업계획서
2.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
3. 원상복구계획서
4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,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·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.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[제목개정 2021. 7. 23.]

제4조의2(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)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3.>

[본조신설 2011. 3. 23.]

[제목개정 2021. 7. 23.]

제5조(조사서의 기술적 심사)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"지방환경관서의 장"이라 한다)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8. 9. 25.>

제6조(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-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23.>
- ③ 시·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,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6. 15.>

[제목개정 2011. 3. 23.]

제7조(환경영향조사)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, 조사방법,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. 다만,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의2(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)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"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20.>

1. 지하수,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
2. 잠재오염원 현황자료

3. 기상 및 수문(水文)자료
 4.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
 5. 지구물리 탐사자료
 6. 양수(揚水)시험 및 수리상수(水理常數: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) 자료
 7. 공내검층(孔內檢層: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) 측정자료
 8.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
 9.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
-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.
1.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: 법 제12조제2항 전 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
 2.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: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
-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- [본조신설 2014. 7. 22.]

제8조(조사대행자의 등록)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(이하 "조사대행자"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1.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
 2. 장비명세서(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)
 3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-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시설·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-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 2.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
-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, 2013. 2. 1.>
-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,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 3. 23.>
1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제9조(시설기준)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10조(영업의 허가 등)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,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,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,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,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, 2025. 2. 21.>

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

-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한다)
- 나. 제조공정 설명서
- 다. 취수정별 취수예정량
- 라. 취수정설비명세서(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)
- 마. 취수정 형성상태(形成狀態)를 촬영한 텔레비전-카메라 검증(檢層)필름
- 바. 배수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)
- 사.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)

2.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

-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한다)
- 나.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

3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

- 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를 포함한다)
- 나. 보관시설명세서
- 다. 원수(原水)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- 라. 원수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
3의2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

- 가. 사업계획서(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)
- 나. 보관시설명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)

4.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

- 가. 정수기의 품목·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
- 나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(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- 다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(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, 필터 공급방법,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5.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

- 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를 포함한다)
- 나. 보관시설명세서
- 다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
- 라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

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제조공장의 소재지

2. 제조품목

-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-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신설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1. 제품명

2. 제조사

3. 보관시설의 소재지

-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1. 제조공장의 소재지

2.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

-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·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 ·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08. 9. 25., 2011. 3. 23., 2021. 7. 23.>

1. 허가증 ·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

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
3. 삭제<2017. 11. 20.>

- ⑧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,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23.>

1.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: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·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

2.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: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

3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: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 ·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

3의2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: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 ·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

4. 정수기의 제조업 ·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: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 ·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

-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11. 3. 23., 2018. 12. 13., 2019. 12. 20., 2021. 7. 23., 2025. 2. 21.>

1.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[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(諸元: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)을 포함한다]

2. 구조도면

3. 제품 안내서

4.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

5. 사후관리계획서

6.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(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)

7.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

-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.<신설 2011. 3. 23., 2025. 2. 21.>

제11조(휴업 등의 신고)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(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)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허가증·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, 2023. 6. 1.\]](#)

제12조(샘물등의 수위·수량·수질 관리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·관리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. [\[신설 2013. 10. 30.\]](#)

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·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(이하 "측정결과"라 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, 2013. 10. 30.\]](#)

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. 다만,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10. 30.\]](#)

④ 시·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. [\[개정 2013. 10. 30.\]](#)

[제목개정 2013. 10. 30.]

제13조(조건부 영업허가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·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\]](#)

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. [\[개정 2011. 3. 23.\]](#)

제14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 법 제24조제6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"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(地盤沈下), 수자원의 고갈,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\]](#)

제15조(영업의 승계)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·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② 시·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,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11. 20.]

제16조(수입신고 등) ① 먹는샘물등,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1부씩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, 2017. 11. 30., 2025. 2. 21.\]](#)

1.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

1의2. 송장·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원수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,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
3.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)

4.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(수처리제만 해당한다)
5.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.<개정 2011. 3. 23., 2021. 7. 23.>>
 -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23.>>

제17조(품질관리교육)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8. 12. 13.>

1. 신규교육: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. 다만,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가. 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: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
 - 나.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: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
 -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
 2. 정기교육: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(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)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<신설 2018. 12. 13.>>
 -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, 수처리제 제조업자,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,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24. 11. 13.>>
 - ④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,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.<개정 2011. 3. 23., 2018. 12. 13., 2024. 11. 13.>>
- [제목개정 2018. 12. 13.]

제18조(교육과정 등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, 수처리제 제조업자,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3.>

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
2.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
3.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
4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
5.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
6.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,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.<개정 2025. 2. 21.>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4. 7. 22.>>

제19조(교육계획)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, 수처리제 제조업자,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의 기본방향
2.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
3.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· 기간 및 인원
4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20조(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)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.

[제목개정 2011. 3. 23.]

제21조(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)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9. 25., 2011. 3. 23., 2013. 10. 30., 2017. 11. 30.>

1. 수출하는 경우 :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
2.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: 납품계약서 사본
3.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 · 제공하는 경우 : 재난구호기관 · 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
4.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: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

제22조(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)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샘물등의 개발자"라 한다)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취수정 · 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9. 25.]

[제목개정 2011. 3. 23.]

제23조(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) ① 시 ·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 ·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②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· 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수 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9. 25.]

[제목개정 2011. 3. 23.]

제24조(부담금의 부과 · 고지 등)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 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9. 25.>

② 시·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,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(이의신청 등)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3. 10. 30.]

제25조(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)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·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·분할납부 승인(불승인)통지서로 한다.

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.

제26조(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) 시·도지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9. 25., 2023. 11. 17.>

1. 삭제 <2008. 9. 25.>

2. 삭제 <2008. 9. 25.>

[제목개정 2023. 11. 17.]

제27조(징수비용 등의 지급)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9. 25.>

1. 삭제 <2008. 9. 25.>

2. 삭제 <2008. 9. 25.>

제28조 삭제 <2014. 7. 22.>

제29조 삭제 <2014. 7. 22.>

제30조(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·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) 수출용 먹는샘물등, 수처리제,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1.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·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

2. 수출계약서 사본

제31조(광고 제한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

2. 삭제 <2014. 11. 28.>

3.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

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(이하 "먹는샘물등 영업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2. 1.]

제32조(거짓 또는 과대 표시·광고의 금지 등)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·광고의 범위는 용기·포장·라디오·텔레비전·신문·잡지·음악·영상·인쇄물·간판,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·수처리제·정수기 및 그 용기·포장의 명칭·제조방법·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3., 2019. 12. 20., 2021. 7. 23.>

1.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

- 가.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
- 나.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
- 다.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
- 라. "최고"·"특수" 등의 표현이나 "특수제법"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- 마.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·광고
- 바.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

2. 정수기의 경우

- 가.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
- 나. "최고"·"특수" 등의 표현이나 "특수제법"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- 다.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
- 라.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·광고
- 마.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·광고
- 바.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
- 사.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

제33조(자가 품질 검사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1. 3. 23., 2012. 6. 15., 2013. 10. 30.>

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: 별표 6의 검사기준. 다만,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2.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: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(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)
 3.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: 별표 7의 검사기준
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6. 15.>

제34조(수거 등)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·수처리제,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·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·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3.>

② 법 제42조,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·폐쇄·압류 또는 폐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.

제35조(검사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·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 기관(이하 "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"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·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<개정 2008. 9. 25., 2017. 6. 12., 2021. 7. 23.>

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(영 제20조제2항제6호의

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.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6. 13., 2015. 7. 1., 2017. 6. 12., 2018. 12. 13.>

1.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

2.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

3.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

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13.>

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13.>

1.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

2. 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 · 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
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<개정 2008. 6. 13., 2017. 6. 12., 2018. 12. 13.>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(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)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.<개정 2017. 6. 12., 2018. 12. 13.>

1. 국립환경과학원

2.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

3. 시 · 도 보건환경연구원

4. 특별시 · 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 · 수질검사소

⑦ 보건소, 시 · 군 · 구의 정수관리 ·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, 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6. 13., 2008. 9. 25., 2013. 10. 30., 2018. 12. 13.>

1.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른 검사

2.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가목(1) · (2), 나목(1) · (2), 다목(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)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

3.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

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)

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(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)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 · 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<개정 2008. 6. 13., 2017. 6. 12., 2018. 12. 13.>

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개정 2017. 6. 12., 2018. 12. 13.>

1.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

2.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

3.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

4.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

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와 검사

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6. 13., 2008. 9. 25., 2018. 12. 13.>

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8. 12. 13., 2021. 7. 23.>

제36조(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·임기 등)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(이하 "정수기 품질검사기관"이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9. 25., 2021. 7. 23.>

1. 정수기의 구조·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·평가

2.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

3.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3.>

1. 표시사항 분야: 4명 이상

2. 구조·재질 분야: 4명 이상

3.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: 4명 이상

4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: 2명 이상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<신설 2008. 9. 25., 2011. 3. 23., 2018. 12. 13.>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·화학·미생물·위생·기계·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2. 환경·화학·미생물·위생·기계·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. 수질관리·기계·화공·금속재료·품질관리·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 국·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·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5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신설 2008. 9. 25., 2018. 12. 13.>

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8. 9. 25., 2018. 12. 13.>

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8. 9. 25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

2.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신설 2018. 12. 13.>

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된다.<신설 2018. 12. 13.>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-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-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-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[개정 2008. 9. 25., 2018. 12. 13.](#)>

제36조의2(검사기관의 준수사항) 법 제43조제12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"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1. 7. 23.]

- 제36조의3(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)** ① 검사기관(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[개정 2017. 6. 12., 2018. 12. 13., 2021. 7. 23., 2023. 6. 1., 2025. 2. 21.](#)>
1. 신규교육: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. 다만,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.
 2. 정기교육: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[신설 2024. 11. 13.](#)>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<[개정 2024. 11. 13.](#)>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,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[개정 2018. 12. 13., 2024. 11. 13.](#)>
1.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
 2.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
 3.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
 4.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
-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<[신설 2024. 11. 13.](#)>

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\[개정 2024. 11. 13.\]](#)

1. 교육의 기본방향
2.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
3.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· 기간 및 인원
4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

⑦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 [\[신설 2025. 2. 21.\]](#)

[\[본조신설 2011. 3. 23.\]](#)

제37조(소비자보호센터)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9. 12. 20.\]](#)

1.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
2.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
3.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
 - 가.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 · 무선 통신망
 - 나. 피팅(fitting: 고정시키는 부품) · 튜빙(tubing: 배관) · 가압펌프 · 체크밸브 · 취수꼭지 · 필터 등 정수기부품
 - 다. 저수조청소용구 · 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 · 수리기구

제38조(개선기간) ① 환경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, 기계 ·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1. 3. 23.\]](#)

② 환경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\[개정 2011. 3. 23.\]](#)

제38조의2(회수 · 폐기 절차 등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 · 폐기 등의 명령(이하 이 조에서 "회수 · 폐기명령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4. 7. 22.\]](#)

1. 회수 · 폐기 대상 제품

2. 회수 · 폐기량

3. 이행기간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 · 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 · 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.

③ 회수 · 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 · 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· 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회수방법

2.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

3. 그 밖에 회수 · 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

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(이하 "이행기간"이라 한다) 내에 회수 · 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회수 · 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
2.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

-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·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·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- [[본조신설 2011. 3. 23.](#)]

제38조의3(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)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[개정 2018. 12. 13.](#)>

1. 제품명, 생산량(수입량을 포함한다) 및 판매량
 2. 회수사유
 3. 회수계획량(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)
 4. 회수방법
 5. 회수 이행기간(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)
 6.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
 7.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-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·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회수·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 2.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
-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·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[신설 2018. 12. 13.](#)>
- [[본조신설 2014. 7. 22.](#)]

제39조(행정처분기준) 법 제17조제2항,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,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. <[개정 2008. 9. 25., 2011. 3. 23., 2014. 7. 22., 2021. 7. 23.](#)>

제40조(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) 시·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·처분 내용·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.

제41조(행정처분대장 등) 시·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42조(과징금 부과 제외)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"이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, 제2호(나목은 제외한다)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. <[개정 2008. 9. 25.](#)>

제43조(과징금의 부과처분 등)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,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(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)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"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.

[[본조신설 2008. 6. 13.](#)]

제44조(수수료)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.

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·등록·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, 시·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.

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(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)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[신설 2011. 3. 23.](#)>
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[개정 2014. 7. 22., 2017. 6. 12., 2018. 12. 13., 2021. 7. 23.](#)>

1.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: 2014년 7월 22일

2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2의2.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: 2014년 7월 22일

3.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: 2014년 7월 22일

4.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: 2014년 7월 22일

5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6.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·관리기준: 2014년 7월 22일

7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8.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·횟수 및 과정: 2014년 7월 22일

9.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: 2014년 7월 22일

10.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7월 22일

11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12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12의2. 삭제 <[2024. 6. 18.](#)>

13.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: 2014년 7월 22일

14.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·기간 및 과정: 2014년 7월 22일

14의2.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: 2014년 7월 22일

15.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: 2014년 7월 22일

[[본조신설 2014. 4. 30.](#)]

부칙 <제1159호, 2025. 2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· 라목, 같은 조 제9항제7호,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2호 · 제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· 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제3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 · 판매일지의 보관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·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5조(자가 품질 검사 기준의 특례)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2025년 2월 21일을 정수기 제조업 신고일로 본다.